

2026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해체 분야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원창동 336 외 27필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서해구			심의일자	2026. 8. 25.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한국중부발전(주)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						
	지번	336 -	관련지번				
	대지면적	285,551.5	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		일반공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912.13	m ²	건폐율	0.32 %	층수 지하 :	0 층/지상: 3 층
	주용도	발전시설(사무실)		구조	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	2 동
	최고높이	9.9	m	용적률	0.68 %	연면적 합계	1,952.53 m ²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 2개동(전체 해체)				해체 연면적 1,952.53m ²		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○			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○		
심의내용	구 분		주요 심의결과				
	(해 체)분야		- 가설 비계를 가급적 오래설치 할 수 있도록 해체 순서를 재검토 요함 - 가설 비계 해체 순서도 작성 - 해체 공사 시 철거 건물 우오수 라인과 단지 내 메인 배관 연결부위 도면 표기 요망 -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

2026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해체 분야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원창동 475-6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서해구			심의일자	2026. 8. 25.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O] 기타			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윤석건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						
	지번	475	-	6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,248.5	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		일반공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11.86	m ²	건폐율	31.66	%	층수 지하 : 0 층/지상: 2 층
	주용도	공장		구조	철골조, 경량철골조		건축물 동수 2 동
	최고높이	7.6	m	용적률	38.34	%	연면적 합계 862.14 m ²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 2개동(전체 해체)					해체 연면적 862.14m ²	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	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x		
심의내용	구 분		주요 심의결과				
	(해 체)분야		- 인양장비(크레인)와 굴착기 위치를 해체 순서에 따라 표기를 요함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	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							
•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							
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							
•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							
•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

2026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해체 분야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심곡동 259-8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서해구			심의일자	2026. 8. 25.	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O] 기타			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이호정, 이희정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동						
	지번	259	-	8	관련지번	259-11	
	대지면적	1,014.25	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 일반주거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467.15	m ²	건폐율	46.06	%	층수 지하 : 1 층/지상: 3 층
	주용도	근린생활시설		구조	철근콘크리트조	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9.4	m	용적률	138.12	%	연면적 합계 1,599.5 m ²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 1개동(전체 해체)					해체 연면적 1,599.5m ²	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		0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x		
심의내용	구 분		주요 심의결과				
	(해 체)분야		- 휴식각(지하터파기) 검토 요함, 단면 검토 - 전면도로 쌍줄비게 외측 부분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비게 하부(2~3M) 구간은 강재 or 목재 등 재질의 휨스로 보강할 것 - 도로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통로를 검토할 것 - 인접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고려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